

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·신설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 및 감액기준을 정하고
-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도장애 이상의 환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
-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경우 시설물의 인근범위 강화(제15조)
 -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
→ 직선거리 150미터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
-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하여 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신설(제15조의2)
 -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 :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× 의무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
 -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 :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× 의무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
 - 부설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감액
-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【별표 2】

4. 참고사항

-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
- 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 작성 지침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추가하고, 날로 가중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서,
-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을 무료화 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고,
- 주차장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의 단축과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,
- 주차장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법 제18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을 조례안 준칙에 의거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되며,
- 기타 개정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